조사 결과 조치할 사항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국민체육진흥공단	○ 국민체육진흥공단(이하 "공단")은 2022년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을 기획하면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 소지가 없도록 유사 행사 사례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차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실히 하여야 했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하였음 ○ 또한, 당초 행사명을 '올림픽레거시 포럼'으로 정하면서 매년 전 세계 올림픽레거시 관리주체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으로서의 확장·발전을 계획하였으나, IOC와의 협의 과정에서 포럼의 성격 및 대상이 서울올림픽에만 한정된다는 의미로 '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'으로 행사명이 변경되었고, 포럼 개최 이후 IOC는 '향후 올림픽레거시포럼은 IOC 주재 하에 할 것이며, '23년도 포럼은 2024 하계올림픽 개최국인 프랑스 파리로 생각'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향후 공단이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☞ **포럼 행사의 필요성·효과성 및 타 국제행사와의 차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"통보"**
	○ 공단은 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대행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당초 기본계획상에 없던 사업내용이 추가되거나, 기존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계약금액이 74.8% 증가함. 증가된 사유에 대해 항공권 가격 급등 및 초청 인원 증가, IOC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신설 등을 적시하였으나, 해외 초청 관련 비용 외 거의 모든 항목에서 예산이 증가되는 등 당초 행사비 산출내역 검토가 부실했음 ○ 또한, 공단이 운영 중인 올림픽파크텔과 거래할 내역(식음, 숙박, 대관료 등)까지 산출내역에 포함시켜 업체가 대행하도록 하여 공단이 올림픽파크텔과 직접 거래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▲업체 일반관리비(4%), ▲기업이윤(10%), ▲부가세 등 총 16,450,870원을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함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	☞ **국제행사 등 추진 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"기관 주의" 조치**
	○ 공단 소마미술관은 개관 후 15년이 지난 '19년에서야 체계적인 조각작품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, '올림픽조각공원 작품관리 매뉴얼 구축 개발 용역'을 실시하였는데, 연구용역 결과로 제안받은 작품관리 서식 4종 중 1종(기초점검 서식)만 활용하고 있고, 작품별·재질별·전시환경별 관리방법과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자체 규정이나 공식적인 매뉴얼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, 작품관리의 표준업무절차, 업무 범위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조각품을 관리 중임 ○ 또한,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공단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경비·미화·시설물 관리 등을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위탁하고 있어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실시한 일상관리업무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·점검하고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, 기본적인 물세척, 먼지제거 등이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, 공단 소마미술관은 작품별 또는 구역별 실제 물세척 여부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조각작품 관리를 방치하는 등 조각작품 현장일상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☞ **조각작품에 대한 현장일상관리를 소홀히 한 공단 소마미술관에 대해 "기관주의" 조치하고, 체계적인 작품관리를 위한 자체 업무처리지침 또는 공식적인 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"통보"**
	○ 공단「미술관 운영지침」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소장작품에 대하여 망실, 훼손 및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구체적인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채 조각작품에 대한 공식적인 관리는「고정자산 관리규정」을 적용하고, 실제로는 별도의 '작품관리대장'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등 이원적인 체계로 조각작품을 관리하고 있는데,

구분	지적 및 조치 요구
	- 총 221점의 작품 중 16점(7.2%)의 작품을 자산관리대장에 잘못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, 6점의 작품은 미등록 또는 잘못 등록되어 있어, 해당 작품이 망실,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, 공공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각작품이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됨 ○ 또한, 공단「고정자산 관리규정」제22조에 따르면 분임재산관리관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재산관리대장을 실제와 대조·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, 공단 총무팀은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지 않은 채 공단 소마미술관의 중요자산인 조각작품에 대한 자산 조사를 누락하는 등 이를 방치함 ☞ **조각작품에 대한 자산관리를 소홀히 한 공단 소마미술관과 총무팀에 대해 “기관주의” 조치**